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- 3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보관기간 경과)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 년 4월 17 일

1. 공고제목 :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8. 4 17 ~ 2018. 5. 1. (15일간)

3. 대 상 자

연번	납부자	출생년도	주 소	변상금 사전통지액(원)	반송사유	비고
1	박 * 영	1961	청주시 상당구 명*로 276번길 **	467,920	폐문부재	

4. 공고내용

귀하에게 발송된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니 2018. 5. 1.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기한 내 사전통지 내용 확인 또는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고방법 :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, 보은관리소 게시판

6. 문 의 처 :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(☎043-540-7053)

보은국유림관리소장

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- 3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보관기간 경과)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 년 4월 17 일

1. 공고제목 :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8. 4 17 ~ 2018. 5. 1. (15일간)

3. 대 상 자

연번	납부자	출생년도	주 소	변상금 사전통지액(원)	반송사유	비고
1	김 * 수	1959	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**리 ***-1	940,260	폐문부재	

4. 공고내용

귀하에게 발송된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니 2018. 5. 1.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기한 내 사전통지 내용 확인 또는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고방법 :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, 보은관리소 게시판

6. 문 의 처 :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(☎043-540-7053)

보은국유림관리소장